

## 교육위원회 규정

---

### 제1장 총 칙

#### 제1조 (명칭)

본 위원회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교육위원회라 한다.

#### 제2조 (임무)

본 위원회는 총회의 교육정책과 교육원 예산안을 심의하고 교육원과 교회 학교교사전국연합회를 지도, 감독하며 교육원장을 실행위원회에 추천한다.

### 제2장 조 직

#### 제3조 (조직)

본 위원회는 각 노회 1인씩 총 29인(여성 위원 1인 추가)으로 조직한다.

#### 제4조 (임기)

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첫 공천에서 년조를 나누어 공천한다. 임기는 총회 후 첫 정기회부터 기산한다.

#### 제5조 (임원)

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, 서기 1인의 임원을 정기회에서 투표로 선정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
#### 제6조 (소위)

본 위원회는 연구 및 업무의 효율과 편의를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#### 제7조 (목회자 계속교육 운영위원회)

목회자 계속교육 운영을 위하여 교육위원장, 영성수련원 위원장, 총회 총

무, 총회교육원장, 한신대 신학대학원장, 목회와신학연구소장, 영성수련원장, 농촌개발원장, 교육위원회 추천 전문위원 2인(여성), 총회 추천 위원 2인, 총회교육원 교수부장, 사회복지전문인 2인 총 15인으로 구성된 계속 교육 운영위원회를 둔다.

### 제3장 회 의

#### 제8조 (회의)

본 위원회는 총회 후 첫 번째 모임을 정기회로 하며,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시 소집할 수 있다. 안건은 소집 7일 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.

#### 제9조 (결의)

본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.

### 제4장 개정 및 시행

#### 제10조 (개정)

본 규정의 개정은 총회의 지시가 있을 때 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총회에 헌의하여 개정한다.

#### 제11조 (시행)

본 규정은 총회 통과 즉시 시행한다.

2007년 9월 제92회 총회 제정  
2013년 9월 제98회 총회 개정  
2016년 9월 제101회 총회 개정  
2018년 9월 제103회 총회 개정